

2026년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

경기도 여성 연구자 인재 육성,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『2026년도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2. 12.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

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기술개발 발굴, R&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

□ 지원규모 : 5개 과제 내외 (과제당 연간 최대 9천만원 이내)

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

□ 전문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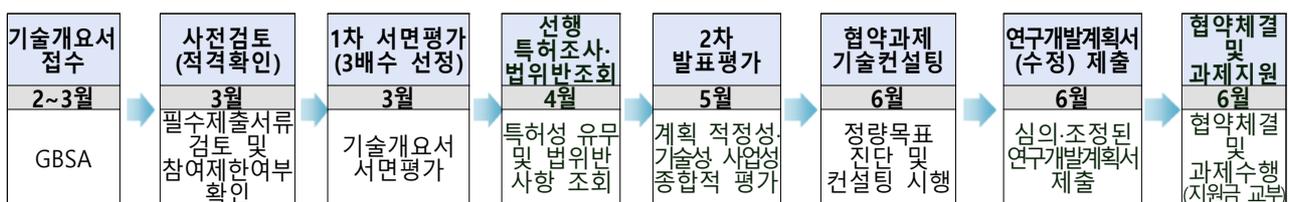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(도내 기업)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를 운영 중인 도내 기업
- (도내 대학, 연구기관) 경기도 내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

*** 연구책임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 과학기술인이어야 함**

□ 지원내용 :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, 직접비(연구장비·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등) 지원

□ 추진절차



2

지원금액 및 기간·사업비

□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
 - ※ **도내 기업, 대학·연구기관의 단독 연구개발 또는 도내 기업,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신청 가능**
 - ※ 세부사항은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
○ 지원내용

| 구 분 | | 1차년도(2026년) |
|------|--------|---|
| 지원기간 | | 협약체결 후 1년 (협약예정기간 : '26.6.~'27.5.) |
| 대상 | 주관연구기관 | [기업] 도내 사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운영 중인 기업 [연구기관] 도내 소재 대학, 연구기관 ※ 연구책임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 과학기술인 이어야 함 |
| | 공동연구기관 | 도내 기업 및 대학· 연구기관 |
| 지원규모 | | 최대 9천만원 내외 |
| 선정범위 | | 5개 과제 내외 |

- 1) 도내 기업 :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 중인 자
 - 2) 도내 대학, 연구기관 : 경기도 내 소재 대학, 연구기관
 - 3)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구분없이 2026 경기도 기술개발사업, 2026 R&D첫걸음 지원사업, 2026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·접수할 수 없음
 - 4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는 사업 공고기간 내 제출한 인정서 설립신고일을 기준으로 함
- ※ 세부 지원 자격 사항은 하단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
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10%(현물) 이상 부담

| 총 연구개발비(A) | 지원연구개발비(B)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(C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지원연구개발비(B)+기관부담연구개발비(C) | 90% 이내 (최대 9천만원 이내) | 10% 이상 (현물) |

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비율은 ‘총 연구개발비’의 10% 이상

[참고 1]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

- 지원연구개발비 9천만원 신청할 경우

| 구 분 | 지원연구개발비(B)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합 계 (총 연구개발비) (A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기관부담 현물(C) | |
| 계산식 | $B \leq (\text{총 연구개발비} \times 0.9)$ | $C \geq (\text{총 연구개발비} \times 0.1)$ | - |
| 금 액 | 90,000,000원 | 10,000,000원 | 100,000,000원 |
| 비 중 | 최대 90% 이내 | 10% 이상 | 100% |

3

신청자격

□ 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**‘공고일 (2026.2.12.)’**기준

※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**협약 종료일까지 신청자격조건 유지**

□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 자격기준

| 수행기관별 | | 신청자격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주관연구 기관 | 기업 | 경기도 소재 (①과 ②, ③ 모두 충족해야 함) | 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 ②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설치·운영 ③ 연구책임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과학기술인 |
| | 대학 및 연구기관 |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 | ①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② 연구책임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과학기술인 |
| 공동연구 기관 | 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 | 경기도 소재 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 | |

※ 연구소 인정서는 **2026. 2. 1. ~ 2026. 3. 9.(공고일~접수마감일)** 기간 **내 발급분에 한함**

[참고 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[참고 3] 대학 및 연구기관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-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 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**2026. 2. 23.(월) 10:00 ~ 3. 9.(월) 18:00**까지

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**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**

※ **접수 마감일에는 많은 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 요망**

□ 신청방법 (온라인만 가능)

- 경기도R&D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산 제출
 - ①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,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(필수)
 - ② 온라인 과제관리 ▶ 접수관리 ▶ 신청서 ▶ 등록
 - ③ 분야별 공고선택 ▶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
 - ④ 기술개요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
| PMS 사업신청서 | 구분 | 방법 | 내용 | 파일명 작성 규칙 | 예시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파일 | 1.기술개요서 | 기술개요서 파일 | 기술개요서 | 2026여성과학기술인_기업명_기술개요서 | 2026여성과학기술인(주)경기①기술개요서 |
| | 2.신청서류 | 압축(ZIP) | 제반서류 | 2026여성과학기술인_기업명_연번서식명 | 2026여성과학기술인(주)경기②공장등록증 |
| 압축 파일 | | | 2026여성과학기술인_기업명 | 2026여성과학기술인_(주)경기 | |

- 기술개요서, 서약서 등 신청서류에는 기업(관)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
 - * 제출된 기술개요서 및 서류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
 - *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(단,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)
-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되고, 제출 이후 내용 수정 불가하오니, 제출완료 전 반드시 서류 일체 확인 바람
 - * 기술개요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페이지 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신청서 첨부파일 파일 추가 → '저장' 버튼 클릭 → '제출' 버튼 클릭 → 접수증 확인
 - * '제출' 버튼을 누르지 않아 최종 접수되지 않거나, 파일이 누락된 채로 제출된 경우, 결격 처리되며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구제 불가

① 신청 서류 목록 (최초 제출서류 [‘26.2.12~3.9.]

| 구분 | 연번 | 서 식 명 | 해당서류제출 | |
|-----|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주관기관 | 공동기관 |
| 필수 | ① | 기술개요서 1부 (소정양식,『서식1』참조) | ○ | |
| | ② | 참여자적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소정양식,『서식2』참조) | ○ | ○ |
| | ③ |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(소정양식,『서식3』참조) | ○ | ○ |
| | ④ |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※ 국세청 누리집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발급 가능 | ○ | ○ |
| | ⑤ |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(https://www.rnd.or.kr/)에서 발급가능 | ○ | ○ |
| | ⑥ |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민등록등본 1부 | ○ | |
| 해당시 | ⑦ |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 1부(영리기관·법인사업자만 해당) | ○ | ○ (기업만) |
| | ⑧ | 공장등록증(해당시) 1부 ※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미설치,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 | ○ | ○ (기업만) |

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’26.2.1.~3.9.(공고월~접수마감일)

② 발표평가 대상기관 제출 서류 목록 (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함)

| 구분 | 연번 | 서 식 명 | 해당서류제출 | |
|-----|----|--|--------|------|
| | | | 주관기관 | 공동기관 |
| 필수 | ① | 연구개발계획서 1부 (소정양식,『서식4』참조) | ○ | |
| | ②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| ○ | ○ |
| | ③ |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만 제출 ※ 최근(법인: 2024년 귀속분, 개인사업자: 2023년 귀속분)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‘표준재무제표 증명(국세청 발급분)’ 또는 ‘재무제표 확인(회계사·세무사 확인본)’ 원본 제출 | ○ | ○ |
| | ④ | NTIS 제재정보 확인서 - 기업의 경우 총 3부 ☞ 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1부, 연구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1부, 소속기관제재확인서(기관) 1부 - 대학·연구기관의 경우 총 1부 ☞ 연구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1부 ※ 연구기관(도내 대학·비영리기관)의 경우, 연구기관의 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및 연구기관(소속기관) 제재확인서는 미제출 ※ 발급방법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(http://ntis.go.kr), FAQ 참고 | ○ | ○ |
| | ⑤ |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(소정양식,『서식5』참조) ※ 영리기관(기업)만 제출, 5.지원제한 ④참조 | ○ | ○ |
| | ⑥ |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 각 1부 (소정양식,『서식6』참조) | ○ | |
| 해당시 | ⑦ |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(『서식7』) ※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)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범위반 행위에 한하며 미제출시 감점 20% 적용([참고6] 참조) | | |
| | ⑧ |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(소정양식,『서식8』참조) | | ○ |
| | ⑨ | 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 | ○ | ○ |

※ 서면평가 이후 해당 기관에 한하여 추가 제출자료 안내 예정

5

지원제한

- ※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,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.
- ※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※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**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**될 수 있음
- ※ 기관자격, 접수서류, 수행 과제수, 인건비 계상률, 의무사항,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**접수마감일 기준**으로 판단하며, 이외 과제 중복성,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 검토별 전문 기관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
- ※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, 명의도용,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※ 각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**접수 마감일**을 기준으로 함 [2026.3.9.(월)]

| (사전) 지원 제외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구분 | 내용 | |
| (사전) 지원 제외 |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- 1개 기업이 본 사업 외 아래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접수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기도 기술개발사업, R&D 첫걸음 지원사업,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-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(분야)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-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활용한 경우 |
| | 접수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
| | 수행이력 및 참여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, R&D첫걸음 지원사업 및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신청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- 주관연구기관(장), 공동연구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|
| | 과제 중복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(기지원, 기개발)이 판단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※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://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|

| (사전) 지원 제외 | |
|---|---|
| 구분 | 내용 |
|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건비 계상률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,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 및 기관 기본사업*(연구기관만 해당) 참여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※ 단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, 제57조에서 정한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%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* 기관 기본사업 :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과제 인건비계상률 최소 기준 : 참여연구원 20% 이상,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30% 이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 3개 초과 및 참여연구원으로 5개 초과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중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|
| 의무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|
| (사전) 지원 제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부도 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 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|
| 신용 및 기업상태 ※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해,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 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(접수마감일 기준) ① 체납·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|
| (사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 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 ※ 단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기 부채비율·자본잠식에 따른 지원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(주채권은행에 문의) 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,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|

| (사전) 지원 제외 | | |
|------------|----|---|
| 지원 제외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,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경우 -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(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)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|
| 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|
| 선정 취소 | | |
| | 내용 | |
| 선정 취소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체결 전,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공동)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0%에 대해 이행(지급)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※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포함하여 적용 ※ 발급수수료는 연구개발비로 계상(직접비-연구활동비)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S(경기도 R&D과제관리시스템)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수행기간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- 여성과학기술인연구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(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 |

6

기술료
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등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
-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경우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증가액을 기준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- ※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을 따름

[참고 3] 성공기술로 징수 대상 및 기준

- 연구개발결과물 직접실시에 의한 매출 발생 ※ 일시납일 경우 40% 감면

| | |
|-------|---|
| 징수대상 | 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동안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(당해연도 말 매출액) - (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말 매출액) |
| 산출요율 | A(지원금), B(기술기여도), C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), 50%(징수율 상한) |
| 징수기술료 | $0.5 \times A \times B \times C$ |

-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한 기술료 수익 발생

| | |
|-------|---|
| 징수대상 | 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이내의 기간에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기업 |
| 산출요율 | A(기술이전수익), B(기술기여도), 50%(징수율 상한) |
| 징수기술료 | $0.5 \times A \times B$ |

7 선정평가기준 및 추진절차

□ **평가기준**

○ **사전검토(최소자격확인)**

- 신청자격 적격 확인을 위한 최소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 - 도내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등

[지원제외]

-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(경기도 소재 등)
- ②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○ **서면평가(3배수)**

-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개요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·평가
-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- **작성 요령(분량 제한 등) 미준수 시**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평가지표 :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(20점),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가능성 (40점), 연구인력 및 인프라(20점), 사업화 계획(20점)

○ **선행특허조사(발표평가 대상 과제)**

- 과제별 기존 기술 관련 선행문헌과의 유사도 및 기술의 진보성·차별성 여부 분석 등 특허성 여부 조사
- ⇒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

○ 법 위반 여부 검토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((1)공정거래법 (2)하도급법 (3)표시광고법 (4)근로기준법 (5)산업안전보건법 (6)폐기물관리법 (7)대기환경보전법 (8)소음진동관리법 (9)물환경보전법 (10)국세기본법 (11)지방세기본법) 중 법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**발표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**하여 최종점수 산정
-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(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예정 행위)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하여“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”제출 시 감점 미적용 ([참고5] 유예대상 목록 참조)

※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| 적용법률 | | 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|---|
| I 공정 | ① 공정거래법 |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,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|
| | ② 하도급법 |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(原事業者)와 수급사업자(受給事業者)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, 균형발전 |
| | ③ 표시광고법 |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·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|
| II 노동 | ④ 근로기준법 |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|
| | ⑤ 산업안전보건법 |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|
| III 환경 | ⑥ 폐기물관리법 |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|
| | ⑦ 대기환경보전법 |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,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 |
| | ⑧ 소음진동관리법 | 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,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|
| | ⑨ 물환경보전법 |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, 하천·호소(湖沼)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 |
| IV 납세 | ⑩ 국세기본법 | 국세,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(課稅),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|
| | ⑪ 지방세기본법 | |

[참고5]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(경기도고시 제2026-8호)

| 구분 | 법령 | 법위반 행위 |
|----|---------|---|
| 1 | 공정거래법 | •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|
| 2 | 공정거래법 | •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|
| 3 | 표시광고법 | •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|
| 4 | 근로기준법 | • 노동위,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|
| 5 | 근로기준법 | •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(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) |
| 6 | 근로기준법 | •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(미발급) |
| 7 | 근로기준법 | •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(미작성) |
| 8 | 근로기준법 | •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(계약서류 미보존) |
| 9 | 근로기준법 | •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(대장, 명세서 미작성) |
| 10 | 근로기준법 | •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(미비치) |
| 11 | 근로기준법 | •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(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) |
| 12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산업안전지도사 등록, 등록갱신 미이행 |
| 13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|
| 14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|
| 15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|
| 16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(근로자대표 참여 배제) |
| 17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|
| 18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|
| 19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휴게시설 미설치 |
| 20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|
| 21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|
| 22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(책임자 미지정) |
| 23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(미작성) |
| 24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|
| 25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|
| 26 | 산업안전보건법 | • 불성실 보고 |
| 27 | 폐기물관리법 | •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|
| 28 | 폐기물관리법 | •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|
| 29 | 폐기물관리법 | 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|
| 30 | 폐기물관리법 | • 폐기물의 인계·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|
| 31 | 폐기물관리법 | 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|
| 32 | 폐기물관리법 | •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|
| 33 | 폐기물관리법 | •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|
| 34 | 폐기물관리법 | •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|
| 35 | 소음진동관리법 | •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|
| 36 | 소음진동관리법 | •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|
| 37 | 소음진동관리법 | 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|
| 38 | 소음진동관리법 | •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영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|
| 39 | 소음진동관리법 | 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|
| 40 | 물환경보전법 | •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|
| 41 | 물환경보전법 | •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|
| 42 | 물환경보전법 | •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|

[참고5]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(경기도고시 제2026-8호)

| 구분 | 법령 | 법위반 행위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3 | 물환경보전법 | •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|
| 44 | 물환경보전법 | •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|
| 45 | 물환경보전법 | •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|
| 46 | 물환경보전법 | 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|
| 47 | 지방세기본법 | 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|

○ **발표평가**

-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-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(양산)능력 등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
-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5개를 지원과제로 선정
- **작성 요령(분량 제한 등) 미준수 시**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평가지표 : 개발계획의 적정성(20점),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(20점), 목표달성 가능성(30점),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·마케팅 역량(30점)
- 우대사항 : 무역 위기 관세대응 R&D 과제(6대 관세품목 관련)

[대상품목]

- ☞ 철강, 알루미늄 / 자동차(부품) / 구리(가공품) / 목재 / 반도체 / 의약품(기기)
- ※ 대상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[4-3.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및 대응전략] 작성필수

- **과제선정** :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- 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선정 이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과제선정 취소

8

기타 공지사항

-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 있음
- **사업설명자료**
 - 내용 : 2026년도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온라인 접수요령 등
 - 링크 :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게시예정

□ 온라인 Q&A 설명회 개최('26.02.25. 예정)

- 내용 : 2026년도 경기도 R&D사업 관련 질의응답
- 링크 :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공지사항 게시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 참조)
-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공동)은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- ※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 포함하여 적용
- 발급수수료는 연구비(직접비-연구활동비)로 계상

□ 기타사항

-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

□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 (필수)

-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 (사업비 전용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

□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

-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가금 부과
 - ※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
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
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
-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·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

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

9

문의처

□ 사업담당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R&D지원팀

☎ 031)-259-6781 / ✉ rnd@gbsa.or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
| | |
|-----|--|
| 서 식 | 1. 기술개요서 |
| | 2.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|
| | 3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|
| | 4. 연구개발계획서 |
| | 5.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|
| | 6.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 |
| | 7.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|
| | 8.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|
| 별 첨 | 1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|
| | 2. 산업기술분류표 |
| | 3.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. 끝. |